

##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(상임위원대우)중 상임위원에게는 “월 487,000원”을 “월 531,000원”으로 하고 “월액수당과 월액수당의 400%에 해당하는 기말수당”을 월액수당과 월액수당의 400%에 해당하는 기말수당 및 월액수당의 100%에 해당하는 정근수당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2. 1. 1부터 적용한다.

## 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	행	개	정
<p>제9조(상임위원대우) 상임위원</p> <p>에게는 <u>월 487,000원의 월액수</u></p> <p>당과 월액수당의 40%에 해</p> <p>당하는 기말수당을 <u>지급한다.</u></p>	<p>제9조(상임위원대우) 상임위원</p> <p>에게는 <u>월 531,000원의 월액수</u></p> <p>당과 월액수당의 40%에 해</p> <p>당하는 기말수당을 <u>지급하며</u></p> <p><u>100%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</u></p> <p><u>지급한다.</u></p>		